

의안번호	제 230 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월 일 (제 304 회)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1년 10월 10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 230 호
----------	---------

제출연월일 : 2011년 10월 10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국토의 중심, 교통 요충지 및 잠재적 관광자원 가치가 있는 청남대를 활용한 우리도의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국 최대의 국내·외의 희귀 수집명품 박물관 건립과 대통령 역사기록화 전시 및 리더십센터 등을 갖춘 대통령역사교육관을 건립하고,
- 혁신도시와 인근지역 간 연계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거버넌스 구축 등을 지원하는 혁신도시 내에 비즈니스센터를 신축하고 충주의료원이 응급 및 야간환자의 신속한 대처 등 지역 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숙사를 신축하며,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사업계획에 따른 연구시설 부지조성과 원활한 포도품종 육종을 위한 시험포장 대체부지를 매입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세계 수집명품 박물관 건립》

- 위 치 : 청주시 주중동 514-8 일원(밀레니엄타운 내)
- 사업규모
 - 토지매입 :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4-8 등 11필지 115,500㎡(세부내역: 불임)
 - 건물신축 : 3동/지상 3층, 연면적 50,000㎡
- 사업기간 : 2012. 1 ~ 2018. 12.
- 사 업 비 : 288,300백만원(국비 100,000 도비 188,300)

《대통령 역사교육관 건립》

- 위 치 : 청원군 문의면 신대리 산 34-1번지(청남대 내)
- 신축규모 : 지상 3층, 연면적 4,600㎡
- 사업기간 : 2011. 10. ~ 2013. 12.
- 사 업 비 : 7,600백만원(국비 3,000, 도비 4,600)
※ 총사업비 10,000백만원 중 2,400백만원은 역사기록물(60점) 제작비임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신축》

- 위 치 :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C1블럭)
- 사업규모
 - 토지매입 : 3,200㎡/ 800백만원
 - 건물신축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600㎡/ 1,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사 업 비 : 2,000백만원(도비 100%)

《충주의료원 임직원 기숙사 신축》

- 위 치 : 충주시 안림동 산45-1번지 일원(신축병원 내)
- 사업규모 : 지상 3층, 연면적 2,315.2㎡
- 사업기간 : 2012. 1 ~ 2011. 12.
- 사 업 비 : 3,9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 부지취득》

- 위 치 :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25번지
- 부지매입 : 340,057.8㎡
- 사업기간 : 2012. 1. ~ 2015. 12.
- 사 업 비 : 31,183백만원(도비 100%)

《육종시험포장 부지취득》

- 위 치 :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30번지 일원
- 토지매입 :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30 등 5필지, 11,238㎡(세부내역: 불임)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100%)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1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4 건	469,995.8	67,383,000				
	건물	4 건	57,515.2	266,000,000				
	기타							
1	토지	청주 상당구 주중동 514-8 등 11필지	115,500.0	35,000,000	2013~ 2016	세계수집명품 박물관 건립	충북개발 공사	
	건물	"	50,000.0	253,300,000	2013~ 2018	"		
	기타							
2	토지							
	건물	청원 문의면 신대리 산 34-1번지	4,600.0	7,600,000	2012~ 2013	대통령 역사 교육관 건립		
	기타							
3	토지	진천·음성 혁신 도시 내(CI블럭)	3,200.0	800,000	2012~ 2012	혁신도시 비즈 니스센터 신축	LH공사	
	건물	"	600.0	1,200,000	2012~ 2012	"		
	기타							
4	토지							
	건물	충주시 안림동 산45-1번지	2,315.2	3,900,000	2012~ 2012	충주의료원 임직원 기숙 사 신 축		
	기타							
5	토지	청원 강외면 연제리 625번지	340,057.8	31,183,000	2012~ 2015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부지조성	LH공사	
	건물							
	기타							
6	토지	옥천 청성면 산계리 30번지 등 5필지	11,238.0	400,000	2012~ 2012	옥천시힘포장 대체부지 확보	개인	
	건물							
	기타							

토지취득 대상지 세부내역

세계 수집명품 박물관 건립(부지)

(단위 : m², 백만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예정가격	비고
계	11 필지			115,500	35,000	
1	청주 상당구 주중동	514-1	전	8,314	2,520	
2	청주 상당구 주중동	514	답	5,831	1,767	
3	청주 상당구 주중동	514-8	전	17,036	5,163	
4	청주 상당구 주중동	525-15	임	16,078	4,873	
5	청주 상당구 주중동	산149-1	임	6,175	1,872	
6	청주 상당구 사천동	산59-3	임	6,732	2,040	
7	청주 상당구 사천동	산59-5	임	8,362	2,534	
8	청주 상당구 사천동	산58-1	임	2,083	632	
9	청주 상당구 정상동	산21-1	임	7,537	2,284	
10	청주 상당구 정상동	12-4	전	29,349	8,889	
11	청주 상당구 오동동	340-6	전	8,003	2,426	

육종시험포장 부지취득

(단위 : m², 백만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예정가격	비고
계				11,238	400	
1	육천군 청성면 산계리	30	전	2,059	75	
2	육천군 청성면 산계리	32	과	3,144	114	
3	육천군 청성면 산계리	33	전	2,321	84	
4	육천군 청성면 산계리	55	전	1,697	57	
5	육천군 청성면 산계리	57	전	2,017	70	

관계 법령 발 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p> <p>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